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113820 판결 [연대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유제산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100,000원 및 그중 204,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글리세린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은 글리세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E은 글리세린을 제조하여 D에 공급하였는데, D은 E에 미리 현금 또는 어음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그와 같이 미리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7. 10.부터 2013. 3. 5.까지 E에 605,160,600원을 현금 또는 어음 등으로 미리 지급하였으나, E은 같은 기간 264,202,560원 상당의 글리세린만을 공급하였다.

다. D은 2013. 4. 16. E을 상대로 미리 지급한 돈에서 E이 실제 공급한 물품대금을 공제한 차액 340,958,040원(= 605,160,600원 - 264,202,56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6. 18.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023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라. 한편 D은 E이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E으로부터 D 발행의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소지인들이 어음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그 소지인들에게 합계 2억 원이 넘는 어음금을 변제하였다(D이 어음의 피사취 신고를 하고 예치한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E과 피고들에게 선급금에 상당하는 물품수령 없이 D이 변제하거나 변제할 어음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그 어음 액면금에 상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과 피고들은 2012. 11. 30.경 원고에게 'E은 2012. 11. 30. 원고로부터 229,1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 E이 원금 204,100,000원과 이자 25,000,000원을 2012. 12. 7.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이 이를 대신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원고는 E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229,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E은 D에 대하여 선급받은 물품대금의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원고 개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가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자도 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E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권 역시 함께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D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E이 D으로부터 어음을 선급받고도 공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중 D이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변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손해를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고, 비록 차용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현재 또는 장래의 손해를 차용금으로 갈음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 유효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담보권을 채권자(D)가 아닌 제3자(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채권자의 동의를 있는 이상 여전히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 229,100,000원 및 그 중 원금 204,1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보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관련 사건에서 D이 E을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반환금에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때 원고의 E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과 D의 E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같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에 있는 것으로써 E이 관련 사건 판결상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를 이 사건에서 채무소멸 사유로 항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관련 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에서 자신의 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E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1항) 선급금 반환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차용증은 선급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차용증에 기한 채권 역시 선급금 반환에 따른 채권관계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확정될 필요성이 큰 점에서 상사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선급금 반환기일(2012. 12. 7.)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E을 상대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원고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D의 소제기에 의해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E에 대한 주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임효빈, 판사 방민우